

계약사무처리규정

제정 2013. 12. 31

전부개정 2018. 5.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계약의 기준 및 처리절차 등 계약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① 공사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및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는 “공사” 로, “회계관계공무원” 은 “회계관계담당자” 로, “소속공무원” 은 “소속직원”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공사의 사장” 으로, “공무원” 은 “직원” 으로, “관계 공무원” 은 “관계 직원”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별도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이행각서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청렴이행각서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계약부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이행각서(별표 1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이행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5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 12. 3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내부결재 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5. 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 및 계약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하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